##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1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박성민·박대출·구자근

강민국 • 조경태 • 김위상

박정하 • 이헌승 • 서일준

박덕흠 · 김상욱 · 박수민

김성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
	음)
<u> &lt;신 설&gt;</u>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
	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